

연구용역보고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6. 12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7664



사단
법인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연구용역보고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6. 12

 사단
법인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림부에서 우리학회에 의뢰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 구 진

서희열 강남대학교 교수
김태용 미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규언 고려대학교 교수

목 차

<연구요약>

I 서론	33
1.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33
1.2 선행연구의 검토	35
II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현황	37
2.1 사업자등록 제도의 개요	37
2.2 사업자등록의 기능	40
2.2.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필요	40
2.2.2 통신판매업자로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을 위해 필요	41
2.2.3 적격증빙 제도와 가산세	43
2.2.4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빙	45
2.2.5 접대비의 인정과 적격증빙	48
2.2.6 사업자등록제도와 농민과의 거래 시 불이익	49
2.3 농업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현행 규정	51
2.3.1 현재 농가의 사업자등록 의무	51
2.3.2 특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가공 판매시의 사업자등록	53
2.3.3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세법상 의무	55
2.4 축산업의 사업자등록과 과세 현황	61
2.4.1 축산업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납세 의무	61
2.4.2 축산업의 장부기장 의무와 가산세	62
III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	64
3.1 농가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64
3.1.1 소비자와의 직거래 증가	64
3.1.2 적격증빙 요구의 증가	64
3.1.3 고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필요성 증가	65

3.2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	65
3.2.1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65
3.2.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67
3.2.3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69
3.2.4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72
3.2.5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	74
3.3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담과 추가 논의사항	81
3.3.1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 부담	81
3.3.2 국세 전환 시 작물재배소득의 비과세 규모	82
3.3.3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가산세	84
3.4 사업자등록제 실시할 경우 4대보험과의 관계	88
3.4.1 농업인에 대한 4대보험 지원	88
3.4.2 농업인 사업자등록 시 4대보험 관련 문제점	92
3.4.3 4대보험 관련 개선방안	95
3.5 농가등록제와 연계 방안	98
3.5.1 농가등록제의 현황	98
3.5.2 농가등록제의 농가 사업자등록 대체 가능성	101
3.5.3 농가등록제가 농가 사업자등록을 보완할 가능성	106
IV 사업자등록제 관련 방안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107
4.1 조사의 대상과 방법	107
4.2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107
4.2.1 응답자의 특성	107
4.2.2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응답 분석	109
4.2.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의 응답 분석	116
V 결론	121
참고문헌	125
부록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27

< 연구 요약 >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FTA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고, 농가소득의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음.

- 낮은 생산단가에 기초하여 대량으로 수입되는 저가의 외국 농산물에 대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유기농·친환경·고품질의 브랜드화 전략임.

- 고품질 브랜드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판매망이 구축되어야 함. 최근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직접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신뢰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사업자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인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없어 소비자 직판매에 제약이 있음.

- 인터넷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나,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판매에도 제약이 있음.

- 일부 농업인은 생산한 작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소득세 과세문제, 국민연

금·건강보험에서의 불이익 문제 등 불합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가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가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함.

1.2 선행연구의 검토

○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김태용(2004),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2004), 서희열·정규언(2005)의 연구가 있음.

○ 김태용(2004)의 연구에서는 세무협력의무 만 부과하고 일정금액이상의 매출일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농가 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2004)에서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작물재배업 및 농가부업규모의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사업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 서희열·정규언(2005)에서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경우에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농작물의 판매시 계산서 교부 의무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는 세무협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전액을 농업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생산한 농작물 판매라고 보기 어려운 일정규모 초과분의 매출에 대해서는 초과분 전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

II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현황

2.1 사업자등록 제도의 개요

- 사업자등록의 의의, 사업자등록의 절차 및 미등록에 따른 제재를 설명하였음

2.2 사업자등록의 기능

2.2.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필요

- 사업자등록의 근거규정 및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사업자의 분류	사업자등록 근거규정	발행증빙의 종류	증빙발행의 근거규정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5조	세금계산서,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32조
면세사업자 - 법인	법인세법 111조	계산서, 영수증	법인세법 121조
면세사업자 - 개인	소득세법 168조	계산서, 영수증	소득세법 163조
법인 아닌 농민*	없음	없음	없음
* 법인 아닌 농민의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영수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제도의 미비로 없음			

2.2.2 통신판매업자로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을 위해 필요

- 인터넷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함.
-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2.2.3 적격증빙 제도와 가산세

-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함.
-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의 대상이 됨.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민과의 거래 내용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존재함.

2.2.4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빙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공급받은 면세재화 매입가액의 1/102(음식점업의 경우 5/105)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농산물 등을 농민 이외의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만,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됨.

-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어민의 성명·주민번호와 거래 건수·품명·수량·매입가액을 기록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됨.
- 음식점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2.2.5 접대비의 인정과 적격증빙

- 모든 내국법인과 모든 개인사업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당하게 됨.
- 농민에게 5만원 이상되는 농산물을 접대용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손금불산입 됨.

2.2.6 사업자등록제도와 농민과의 거래 시 불이익

- 사업자의 유형과 발행가능한 공식증빙 및 농민과 거래 시 불이익

판매자	발행가능 공식증빙	구매자의 이용가능 적격증빙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소매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면세사업자	계산서(소매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민	없음	없음 불이익: ① 5만원 접대비 손금불산입 ② 비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불가 ③ 복식부기의무 간이과세 음식 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불가 ④ 공식증빙이 없음

2.3 농업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현행 규정

- 개인 농가의 사업자등록의무, 소득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구 분	사업자등록의무	소득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작물재배소득만 있는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일정 두수 이하의 축산 부업 농가			
“부업축산규모 초과+기타부업소득”으로 연 1,200만원 이하 농가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농업인-면세 재화를 생산	있음 (소득세법)	있음	없음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농업인-과세 재화를 생산	있음 (부가가치세법)	있음	있음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규모 불문	있음 (부가가치세법)	1200만원 초과만 있음	있음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농업인	있음 (소득세법)	있음	없음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제조장을 개설하여 가공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농업인	있음 (부가가치세법)	있음	있음

2.3.3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세법상 의무

(1) 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

-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거나,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제조장을 개설하여

가공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농업인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면,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 시에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3) 종업원 고용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

-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추가의무와 가산세

- 사업자등록을 한 농가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합계표 미제출시 그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2.4 축산업의 사업자등록과 과세 현황

2.4.1 축산업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납세 의무

- 축산업의 사업자등록의무, 소득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구 분	사업자등록 의무	소득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일정 두수 이하의 축산 부업 농가	없음	없음	없음
“부업축산규모 초과+기타부업소득”으로 연 1,200만원 이하 농가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축산 농가	있음 (소득세법)	있음	없음

2.4.2 축산업의 장부기장의무와 가산세

- 축산업자에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

직전연도 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가산세 없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 미달 (간편장부의무자)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 미달 (간편장부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Ⅲ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

3.1 농가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3.1.1 소비자와의 직거래 증가

- 농가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증가
- 최근 농산물 안정성문제와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비자와 농가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소비자가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고 있음.
- 그린투어리즘, 농가체험관광, 민박, 농한기일손잡기사업 등 농촌관광 및 농가부업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가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3.1.2 적격증빙 요구의 증가

- 2000년 이후 농산물 유통시장이 공판장 중심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홈쇼핑의 농산물 유통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행을 요청
- 2000년 이후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는 50,000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에 의한 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과하고 있다. 비록 농민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3.1.3 고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필요성 증가

- 농장의 규모화가 증대되면서 농업부문의 고용 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산업연수생들을 고용하기 위하여서는 산재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고용 인력에 대한 세원관리(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제도 하에서 사업자등록이 없이는 어렵다.

3.2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

3.2.1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 농민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문제점
 -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과세되지 않아 함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농업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이 배제되어 다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장점: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세법개정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

-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 실질과 달리 농업인이 아니라 도·소매업자로 취급되는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 과정도 쉽지 않으며, 그러한 노력이 실패하여 농업인이 아니라 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만일 농업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하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현재의 범규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3.2.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 지방세법에 농가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계산서 발행규정 등을 규정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의 사업자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방안이다.

- 작물재배업과 기타 사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비교

사업의 종류	사업자의 분류	소득에 대한 세목	관련 세법	과세관청
작물재배업	개인	농업소득세(지방세)	지방세법	시·군
	법인	법인세*(국세)	법인세법	국세청
작물재배업 외	개인	소득세(국세)	소득세법	국세청
	법인	법인세(국세)	법인세법	국세청

○ 장점은 농가의 사업자등록 문제와 계산서 발행 문제를 현행의 과세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원칙에 따라 과세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 단점은

- 첫째,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관리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가 된다는 점이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지방세법에 의해 발행된 계산서를 국세에서 인정하는 문제와 계산서의 상호검증을 위한 자료 교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발생할 상당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 2005년 1월 5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이 방안의 단점이 될 것이다.

3.2.3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 작물재배업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 장점은

- 첫째, 농업인을 도·소매업자로 대우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농업인 대우를 할 수 있다.
- 둘째,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제도의 이원화를 피할 수 있다.
- 셋째, 최소한의 세법개정으로 실질에 맞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 단점은 국세의 주무관청인 재경부와 국세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재경부의 반대 이유

- 국세부과와 관련없이 인력과 장비 등 행정력 낭비
- 허위 계산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제재수단이 없음
- 농업 관련인의 위장 등록 가능성

○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이는 방안

- 첫째, 필요성을 느끼는 일부 농민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므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부과한다.
- 셋째, 생산품목과 경작면적 만 확인이 되면 생산가능량의 추정과 농산물의 시세를 통해 자체 생산을 통해 판매가능한 금액의 대략적인 추정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농업 관련인의 위장 등록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3.2.4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 지방세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을 국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과세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

- 국세로 전환 한 후에도 농가의 실질적인 과세부담은 지방세로 있던 경우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비과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장점은

- 첫째, 넓은 의미의 사업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국세로 일원화 된다.

- 둘째,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가 세무서로 일원화 된다.

- 셋째, 비록 단기적으로는 비과세를 유지하여 세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재정부의 반대가 완화 될 것이다.

○ 단점은 국세로 통합될 경우 비과세 등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농업소득의 국세 전환 시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사업소득의 종류	변경전	변경후 안
사업소득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부동산임대소득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산림소득	국세-소득세 (분류과세)	국세-소득세 (분류과세)
농업소득	지방세-농업소득세	국세-소득세 (분류과세)

3.2.5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

○ 농민은 농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농협이 농업인에게 할당된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농협이 농업인을 관리·지도하고 대리하는 자격으로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여 사업자번호를 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농민이 농협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농협에서 이를 집계하여 세무서에 일관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 장점은 농업인의 편리성이다.

○ 단점은

- 첫째, 농협에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둘째, 계산서 발행 관리를 세무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하게 되므로 계산서 발행 관리가 느슨해 질 수 있다.

○ 농업인의 납세지도에 대한 관리비용을 해결하는 방안

- 첫째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 두 번째 방법은 수익자인 농민으로부터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

○ 계산서 발행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계산서합계표 제출 대행자의 통보의무와 가산세 제도를 통하여 통제해야 할 것이다.

○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의 장단점과 추가고려사항

사업자등록 방안	장점	단점	추가 고려사항
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법개정 없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이 아니라 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있어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체계와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체제의 이원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비용 •지방자치단체의 동기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에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 관련 규정을 신설
③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에 맞게 농업인 대우 가능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제도의 이원화 회피 •최소한의 세법개정으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수입이 없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 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부과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요 •일정금액 이상에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④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체계와 일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국세로 일원화 •재경부와 국세청의 반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감면이 지방세 인 경우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비과세 등의 조치가 필요
⑤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업자등록 •농업인에 대한 친절한 세무지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의 관리비용 발생 •세금계산서 발행 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의 관리비용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필요 •대행자의 통보의무와 가산세 제도의 신설 필요

3.3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담과 추가 논의사항

3.3.1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 부담

-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기본적인 세무협력의무를 부담
 - 첫째, 농작물의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둘째, 교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셋째,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넷째,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익년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3.2 국세 전환 시 작물재배소득의 비과세 규모

-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
 - 작물재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모 산정에 참조할 수치는 현행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다.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가축별 두수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축산부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한다. 규정된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연간 1200만원 까지 비과세 된다.

- 비과세 규모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객관적이며, 적용가능성도 높다.
- 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규모를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최소한 수입금액(매출액) 1억2000만원 미만은 비과세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 2005년 1월 5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 기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3.3.3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가산세

- 국세 전환과 비과세 1억2천만원 설정 시 농업인의 가산세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미만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가산세 없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농업 경우) 미달 (간편장부의무자)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농업 경우)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미만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농업 경우) 미만 (간편장부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농업 경우)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3.4 사업자등록제 실시할 경우 4대보험과의 관계

3.4.1 농업인에 대한 4대보험 지원

(1)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 1995년부터 국민연금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는 농업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 다만, 연간매출액이 48백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사업자 및 농업·임업 또

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농업인에 해당된다.

(2) 농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중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농업지원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사업에 대하여서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농업 및 임업의 경우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가입대상 사업에 제외된다.

3.4.2 농업인 사업자등록 시 4대보험 관련 문제점

(1) 국민연금 관련 문제점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간이과세사업자 및 농업, 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농업인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자료가 국세청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공되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국민연금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다만, 본인이 주업이 농업인이고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것으로 농업과 관련된 사업임을 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농업인의 지위를 계속유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 건강보험 관련 문제점

-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발급받고 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5백만원 이상 되는 경우, 농어촌경감 및 농업인에 대한 경감을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3.4.3 4대보험 관련 개선방안

(1) 농장 근로자의 보험문제 해결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농장 및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갑근세 신고, 4대 보험가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할 것을 제안한다.

- 농장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면서 농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어야 한다.

3.5 농가등록제와 연계 방안

3.5.1 농가등록제의 현황

○ 농가등록제는 기초등록사항으로 영농종사자, 경작지구모, 재배작목,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게 해서 직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상세등록사항으로 경영실적, 영농교육실적, 정책수혜실적 등을 등록하게 해서 농림사업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맞춤형 농정의 기초적인 추진시스템이 된다.

3.5.2 농가등록제의 농가 사업자등록 대체 가능성

(1) 농가등록제를 통한 계산서발행 가능성

- 농가등록제가 사업자등록이 가지는 계산서 발행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과세당국에 의하여 관리·통제되지 않는 농가등록제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과세당국이 믿을 수 없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관리·통제되지 않는 계산서를 과세당국이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농가등록제를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가능성

○ 과세당국의 관리·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는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농업인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 이유는 첫째, 과세당국의 관리·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는 농가등록제 농가가 과세당국의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 둘째,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경부·국세청이 제기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가능성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3) 농가등록제를 통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가능성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농가등록증·농가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을 개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사이버몰의 개설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5.3 농가등록제가 농가 사업자등록을 보완할 가능성

- 농가등록제가 농가 사업자등록을 대체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농가 사업자등록을 보완해 줄 가능성은 있다.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개별 농가의 경영관련 사항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고 검증될 수 있다면,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이나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이 가지는 단점인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행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농가등록제가 과세자료와 직·간접으로 연결된다면 농가등록 사항이 진실되지 않고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농가등록제를 과세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연관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장단점 분석은 농가의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과대·과소보고의 동기와 검증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IV 사업자등록제 관련 방안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4.1 조사의 대상과 방법

- 설문조사는 농업인 포털사이트인 www.affis.net 메인화면에서 행해진 온라인 설문조사와 농업관련 인터넷몰 운영자 교육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 총 122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은 소비자 직판의 경험과 관심이 많은 농업인들로 구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4.2.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응답자는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이었으며, 응답자의 56%는 연간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이었다.

응답자 중 61%는 고용직원이 없이 혼자서 영농을 하고 있었으며, 28%의 응답자는 1명 이상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34%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66%는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

4.2.2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응답 분석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에 응답한 비율이 46%이었으며, “납품처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은 49%였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작물재배업의 경우에 스스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1%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29%의 응답자는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농장직원의 4대 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24%, 고용보험은 7%, 산재보험은 12%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61%가 “세무신고의 어려움”에 답을 하였으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배작물의 소득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것”에 49%의 응답자가 답을 하였다.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지방세 과세관청인 시·군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과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4.2.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의 응답 분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편한 점으로는 56%의 응답자가 “소비자 직거래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는 점”을 선택하였으며, “사업자와 거래시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점”을 38%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2%의 응답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이 있다고 답하였고, 38%의 응답자가 없다고 답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서는 응답자 중 64%가 “세무서에 세무신고 및 추가적인 세무부담”을 선택하였으며, 49%의 응답자는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에 따른 부담”을 선택하였다. 42%의

응답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 증가”를 선택하였다.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였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아니한 응답자들도 사업자등록을 이미 한 응답자들과 마찬가지로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V 결론

이상의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를 세무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때는 일정 수준의 매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농업소득세의 국세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는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FTA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고, 농가소득의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환경 악화에 대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중의 하나는 고품질의 브랜드화와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판매망 강화이다.

낮은 생산단가에 기초하여 대량으로 수입되는 저가의 외국 농산물에 대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고품질의 브랜드화 전략이다. 브랜드화 전략은 유기농, 무농약 또는 저농약의 친환경 농산물 또는 고품질을 통하여 추구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중국정부의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농산물 상표등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WTO에 가입한 이후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산물의 브랜드화, 고급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KOTRA global window, 2004.6.2).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부총리가 “FTA로 소득이 높아지면 국산 브랜드 농산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라고 예측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연합뉴스 2006.3.7).

고품질 브랜드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판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기농 무농약의 친환경 농산품은 구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와의 신뢰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직접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신뢰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재배작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인의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은 국제

가 아니라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농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소득은 국세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발행·관리가 국세의 담당기관인 국세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사업자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인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없다. 농업인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판매에 큰 제약을 안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사이버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판매에도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 농업인은 생산한 작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소득세 과세문제,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의 불이익 문제 등 불합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가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가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현황으로 사업자등록의 개요, 사업자등록의 기능, 농업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현행 규정, 축산업의 사업자등록과 과세 현황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농가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으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국

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담과 추가 논의사항, 사업자등록제 실시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의 관계 및 농가등록제와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자등록제 관련 방안에 대한 농업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1.2 선행연구의 검토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김태용(2004),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2004), 서희열·정규언(2005)의 연구에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용(2004)의 연구에서 농가 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5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에 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규정이 신설된 이후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에 대하여 매입처에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협력의무만 부과하고 일정금액이상의 매출일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농가 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2004)에서는 농업인 전용 사업자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농가 사업자등록 의무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득세법 제168조 개정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 및 농가부업규모의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사업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서희열·정규언(2005)에서는 농업분야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중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득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경우에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작물재배업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업인이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농작물의 판매시 계산서 교부 의무와 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세무협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②에서는 매출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판매가격 부분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일반적인 판매가격 초과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전액을 농업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생산한 농작물 판매라고 보기 어려운 일정규모 초과분의 매출에 대해서는 초과분 전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

Ⅱ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현황

2.1 사업자등록 제도의 개요

2.1.1 사업자등록의 의의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법정기한 내에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장의 소재지, 업태·종목·사업개시일, 자본금, 주요취급품목, 주요매입처, 주요매출처 등 사업내용의 주요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다. 즉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동태·사업내용 등의 인지를 용이하게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든 거래관계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세법 168조에서, 법인은 법인세법 111조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1.2 사업자등록의 절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5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

가가치세법 5① 단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7⑧).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7②).

- ①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에 있어 사업허가·등록이나 신고전인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사본·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7③).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7-3).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7⑤).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7④). 이때에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킬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세관장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등)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8②).

2.1.3 미등록에 따른 제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 22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때 등록일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청한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17②(5)).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조세범처벌법 13(13)).

2.2 사업자등록의 기능

2.2.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필요

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소매업의 경우)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면세사업의 경우 법인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소매업 등의 경우)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소매업 등의 경우)을 발행할 수 있다.

법인 아닌 농민의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영수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제도의 미비로 없으며, 매출 시에도 공적인 증빙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농민이 임의로 발행하는 영수증은 세법의 근거가 없는 사적인 영수증이며,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다.

<표 2-1> 사업자등록과 발행증빙

사업자의 분류	사업자등록 근거규정	발행증빙의 종류	증빙발행의 근거규정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5조	세금계산서,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32조
면세사업자 - 법인	법인세법 111조	계산서, 영수증	법인세법 121조
면세사업자 - 개인	소득세법 168조	계산서, 영수증	소득세법 163조
법인 아닌 농민*	없음	없음	없음
* 법인 아닌 농민의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영수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제도의 미비로 없음			

2.2.2 통신판매업자로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을 위해 필요

인터넷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조①, 동 시행령 13조①).

다만,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 없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농업인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 영위시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조①, 동 시행규칙 7조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모든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조건으로 “가맹점 가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중인 사업자”를 제시하고 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작물재배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작물재배사업자도 일부는 필요에 의하여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업자는 가맹점 신청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 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①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2.2.3 적격증빙 제도와 가산세

적격증빙이란 다음의 증빙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소득세법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③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거래금액의 2%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법인세법 76조⑤, 소득세법 81조⑧).

단, 농어민(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민과의 거래 내용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p>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표 2-2>와 같다(소득세법 시행령 208조⑤2).

<표 2-2>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업종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의무자
농업·수렵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가사서비스업		
------------------------	--	--

* 수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⑤2

2.2.4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빙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공급받은 면세재화 매입가액의 1/102(음식점업의 경우 5/105)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17조③).

농산물 등을 농민 이외의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만,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어민의 성명·주민번호와 거래 건수·품명·수량·매입가액을 기록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조③).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부가46015-2921, 1997.12.27, 서면3팀-1727, 2006.08.09).

<p>【분류/일자】 부가46015-2921, 1997.12.27</p> <p>【제목】 조경공사업자가 수목을 농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됨</p>

【질의】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893호(1997. 8. 12)에 대하여 이론이 있어 질의함.
이 예규 내용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민으로부터 공급받은 수목에 대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3팀-1727, 2006.08.09

【제목】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의】

○ 당사는 경기 ○○에서 건설, 조경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임. 질의내용은 □□군 산림조합원인 서* *(사업자등록 없음)으로부터 조합원확인증, 인감증명서, 대금지급영수증을 받고 소나무 및 기타 잡목을 구입하였음.

-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2921, 1997.12.27.)를 참고하기 바람.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면세재화 매입가액의 5/105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26조의3).

단,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해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p>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일반과세자</p> <p>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p>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5 【의제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p> <p>④ 법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2.2.5 접대비의 인정과 적격증빙

모든 내국법인과 모든 개인사업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법인세법 25조②, 소득세법 35조).

이에 따라 농민에게 5만원 이상되는 농산물을 접대용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손금불산입 된다(서면2팀-1843, 2006.09.20).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민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분류/일자】 서면2팀-1843, 2006.09.20

【제목】 (농민으로부터 5만원 초과하는 농산물을 접대용으로 구입한 경우 손금불산입)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농민으로부터 산딸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송금 시켰으며 구입한 산딸기 등을 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한 경우, 이때 구입금액이 건당 40-50만원으로 접대비시부인시 5만원 초과에 따른 적격영수증미수취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 접대비손금대상이 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의 어느 항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5.30.) 등을 참고하기 바람.

2.2.6 사업자등록제도와 농민과의 거래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소매업의 경우)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을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을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소매업의 경우)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을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들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하여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고, 5만원 이상 매입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를 회피하며, 적격증빙 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영수증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민은 발행 가능한 공식증빙이 없어 농민과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내용을 확인 받을 길이 없다.

농민에게 5만원 이상되는 농산물을 접대용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손금불산입 되므로(서면2팀-1843, 2006.09.20) 농민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록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농민과의 거래 내용을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증빙을 확보할 수 없는 거래를 부담스러워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제조업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고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받으

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부가46015-2921, 1997.12.27, 서면3팀-1727, 2006.08.09).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농·축·수·임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해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음식점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격증빙 또는 공적인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는 농민은 판매에 큰 제약이 있다.

<표 2-3> 사업자의 유형과 증빙 및 농민과 거래 시 불이익

판매자	발행가능 공식증빙	구매자의 이용가능 적격증빙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소매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면세사업자	계산서(소매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민	없음	없음 불이익: ① 5만원 접대비 손금불산입 ② 비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불가 ③ 복식부기의무 간이과세 음식 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불가 ④ 공식증빙이 없음

2.3 농업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현행 규정

2.3.1 현재 농가의 사업자등록 의무

(1) 작물재배소득만 있는 농업인

미가공 식료품(식용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12). 여기서 미가공이란 원생산물 뿐만 아니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만을 거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업인은 면세사업자이다.

면세사업자인 농업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법인의 경우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

면세사업자인 농업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작물재배소득만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작물재배업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고, 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다.²⁾

【분류/일자】 제도46011-12356, 2001.07.24

【제목】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질의】

1)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한 후, 농업소득세 납부액은 세액공제 해준다.

2) 예규에서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제도46011-12356, 2001.07.24).

오미자농장 운영으로 농지세 납부 및 상기 작물생산업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으나 종업원 갑근세나 또는 농장에서 판매시 계산서 발행문제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회신】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2)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농업인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하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규정된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부업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이와 같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③). 따라서 소규모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중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③). 따라서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농가부업으로 운영하더라도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물론 농가부업축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부업 소득과 기타의 농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리고 농가부업에서 생산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3.2 특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가공 판매시의 사업자등록

(1) 특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업인

작물재배업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9-1②). 예를 들어 생산한 작물의 일반적 판매가격은 15만원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16만원을 받는 경우, 일반적인 판매가를 초과하는 1만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15만원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1만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농민이 특설 판매장을 개설하여 농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가공 판매하는 농업인

농민이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는 지방세법상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며(지방세법 시행령 152①),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9-1③). 예를 들어 수확당시의 거래시가가 15만원인 농산물

을 제조·가공하여 18만원에 판매하는 경우에 15만원은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15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가 아니라 과세재화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p>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p> <p>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p> <p>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p> <p>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p>

<표 2-4> 개인 농가의 사업자등록의무, 소득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구 분	사업자등록의무	소득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작물재배소득만 있는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일정 두수 이하의 축산 부업 농가			
“부업축산규모 초과+기타부업소득”으로 연 1,200만원 이하 농가	없음	없음	없음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농업인-면세 재화를 생산	있음 (소득세법)	있음	없음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농업인-과세 재화를 생산	있음 (부가가치세법)	있음	있음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규모 불문	있음 (부가가치세법)	1200만원 초과만 있음	있음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	있음 (소득세법)	있음	없음

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농업인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제조장을 개설하여 가공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농업인	있음 (부가가치세법)	있음	있음

2.3.3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세법상 의무

(1) 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

농가가 작물재배소득만 있는 경우, 일정 두수 이하의 축산 부업 농가인 경우, 부업축산규모 초과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의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 농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고, 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그러나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거나,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제조장을 개설하여 가공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고, 익년 5월말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표 2-4> 참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나 계산서 발행 등을 위하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한 작물의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실질적으로 비과세 처분을 받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2)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농업인이 소득세 과세대

상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면,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 시에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63조①). 그러나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11조②).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163조 ⑤, 동 시행령 212조①).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3) 종업원 고용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127조, 164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추가의무와 가산세

관련되는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시행령 208조⑤).

- 농업, 도·소매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만일 사업자등록을 한 농가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합계표 미제출시 그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소득세법 81조⑦).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 미교부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만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소득세법 81조⑧).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70조④5). 만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소득세법 81조⑨).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①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농업인이 기타부업에서 과세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 ② 농업인이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③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제조장을 개설하여 가공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농업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가공한 농산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6)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의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가공농산물, 민박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16조①).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그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22조②).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그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22조③,④).

간이과세자 : 직전 1년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부가세법 §25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한다.

다만, 제조업·도매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부가법시행령 §74②).

2.4 축산업의 사업자등록과 과세 현황

2.4.1 축산업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납세 의무

축산업 소득은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와 달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축산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미가공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함), 축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사업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축별 두수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축산부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하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표 3-4> 참조), 규정된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연간 1200만원 까지 비과세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9조).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일정 두수의 비과세 축산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표 2-5> 축산업의 사업자등록의무, 소득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구 분	사업자등록 의무	소득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일정 두수 이하의 축산 부업 농가			
“부업축산규모 초과+기타부업소득”으로 연 1,200만원 이하 농가	없음	없음	없음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축산 농가	있음 (소득세법)	있음	없음

2.4.2 축산업의 장부기장의무와 가산세

축산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미신고·과소신고와 미납부·과소납부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소득세법 81조①)와 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조④)의 대상이 된다.

둘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함에 따라 근로소득 등의 지급 시에 제출해야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조⑤, 164조)로 미제출금액의 2%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득세법 81조⑩).

넷째, 축산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조⑦),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에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소득세법 81조⑧), 미제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소득세법 81조⑨)가 적용된다.

<표 2-6> 축산업자에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

직전연도 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가산세 없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 미달 (간편장부의무자)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 미달 (간편장부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Ⅲ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

3.1 농가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3.1.1 소비자와의 직거래 증가

농가 사업자등록의 첫 번째 필요성은 소비자와의 직거래 증가로 인함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농가홈페이지가 급증하고, 농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안정성문제와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비자와 농가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소비자가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고 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 농가체험관광, 민박, 농한기일손깃기사업 등 농촌관광 및 농가부업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가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계산서발행이 불가능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3.1.2 적격증빙 요구의 증가

농가 사업자등록의 두번째 필요성은 적격증빙의 요구 증가로 인함이다. 2000년 이후 농산물 유통시장이 공판장 중심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대형 할인마트(이마트, 홈플러스, GS마트, 롯데마트 등), 백화점, 홈쇼핑의 농산물 유통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판매장들은 생산농가와 직접적인 납품을 요청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식자재회사, 외식업체와 농가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자인 이들 거래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적격의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농가에게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는 50,000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에 의한 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과하고 있다. 비록 농민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의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3.1.3 고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필요성 증가

농가 사업자등록의 세번째 필요성은 고용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의 필요성으로 인함이다. 농장의 규모화가 증대되면서 농업부문의 고용 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산업연수생들을 고용하기 위하여서는 산재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고용 인력에 대한 세원관리(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제도 하에서 사업자등록이 없이는 어렵다.

3.2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은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과,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작물재배업의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 지방세 과세기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 그리고 농업소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3.2.1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현재 농업인의 실질에 맞게 작물재배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작물재배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부과대상이고 국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작물재배업의 업종 코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받는 방법은 도·소매업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농가가 카드가맹점 가입, 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으나,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과세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농업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사다가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를 과세해야하고,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하나 그 구분이 쉽지 않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에 판매한 농작물이 직접 재배한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둘째, 농업인이 계산서 발행 등을 위하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이 배제되어 다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농촌진흥청의 농한기 일감 갖기 사업으로 생산된 고품품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없이는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의 비과세 소득금액 한도인 연간 12,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세법개정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첫째, 작물재배소득이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과 달리 국세의 과세대상인 도·소매업으로 보고 국세를 이중으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둘째, 농업인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실질과 달리 농업인이 아니라 도·소매업자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 실질과 달리 농업인이 아니라 도·소매업자로 취급되는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 과정도 쉽지 않으며, 그러한 노력이 실패하여 농업인이 아니라 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만일 농업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하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현재의 법규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3.2.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농업소득세는 지방세이고,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지자면 지방세법에 농가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계산서 발행규정 등을 규정하고,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재화이므로 농산물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또한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정부의 수매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농협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한 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다.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사업자등록 체제를 갖추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이 아닌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통하여 농지 현황과 작물의 생산

량 등을 관리하여 농업소득세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농가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고, 계산서 발행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농가가 사업자로서 생산한 농작물의 직판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려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식자재회사·외식업체·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판매하려해도 구매자 측에서 요구하는 소득세법 상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원칙론적인 방안은 지방세법에 농가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계산서 발행규정 등을 규정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의 사업자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농가의 사업자등록 문제와 계산서 발행 문제를 현행의 과세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원칙에 따라 과세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이 방안의 단점은 첫째,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관리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가 된다는 점이다. 농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이 국세로 되어 있고 농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계산서의 발행관리가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반면에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곳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지방세법에 의해 발행된 계산서를 국세에서 인정하는 문제와 계산서의 상호검증을 위한 자료 교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발생할 상당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2005년 1월 5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이 방안의 단점이 될 것이다.

<표 3-1> 작물재배업과 기타 사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비교

사업의 종류	사업자의 분류	소득에 대한 세목	관련 세법	과세관청
작물재배업	개인	농업소득세(지방세)	지방세법	시·군
	법인	법인세*(국세)	법인세법	국세청
작물재배업 외	개인	소득세(국세)	소득세법	국세청
	법인	법인세(국세)	법인세법	국세청

* 농업소득세를 과세한 후에 법인세 계산 시에 농업소득세 납부액을 세액 공제 한다.

3.2.3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농업인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작물재배업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이 국세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등의 관리와 감독을 국세청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의 사업자등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관리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할 경우에 발생하는 지방세법에 의해 발행된 계산서를 국세에서 인정하는 문제와 계산서의 상호검증을 위한 자료 교환 등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국세청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디 기관에선가는 해결해 주어야 한다. 비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국세로서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소득세법 19①1),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행가능성이 더 높으며, 더 적은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농업인에게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사업자등록이 증가하게 되면, 농업인의 직접 판매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증가하여 농업인과 거래하는 식자재회사·외식업체·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의 상대 거래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무자료 거래의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현행이 방법과 비교하면, 농업인을 도·소매업자로 대우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농업인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비교하면,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제도의 이원화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최소한의 세법개정으로 실질에 맞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단점은 국세의 주무관청인 재경부와 국세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재경부 소득세과 2006).

① 인력과 장비 등 행정력 낭비

국세부과와 관련없이 농업인의 관련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관리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

② 허위 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제재수단이 없음

농업인의 경우 국세부과 대상자가 아니므로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불이익이 없다.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

는자(매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과세소득 계산시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이러한 허위 계산서를 막는 기본적인 원리는 발행하는자(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허위 계산서 등이 발행될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수질서가 훼손되어 국세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농민에게는 계산서합계표 제출도 강제할 수 없어 허위 발행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③ 농업 관련인의 위장 등록

농산물유통업자 등이 조세포탈을 위해 농업인으로 위장 등록할 우려가 높다.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줄일 수 있다.

첫째, 인력 등 행정력 낭비 문제는 모든 농민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이나 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는 일부 농민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므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허위 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부과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산품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농산물의 경우 생산품목과 경작면적만 확인이 되면 생산가능량의 추정과 농산물의 시세를 통해 자체 생산을 통해 판매가능한 금액의 대략적인 추정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으

므로 농업 관련인의 위장 등록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략적인 추정치와 실제 신고하는 자체 생산매출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생산품목과 경작면적의 확인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시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경작면적·생산품목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세제를 변경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유통업자의 위장등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2.4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현행 과세제도의 틀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은 국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작물재배업 업종코드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해주려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은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관리가 세무서와 비장자치단체로 이원화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는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즉, 지방세 과세대상인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을 국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과세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물론 국세로 전환 한 후에도 농가의 실질적인 과세부담은 지방세로 있던 경우에 비하여 변동이 없도록 일정기간 비과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첫째, 넓은 의미의 사업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국세로 일원화 된다는 점이다. 둘째,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가 세무서로 일

원화 되어 일치된다는 점이다. 셋째, 비록 단기적으로는 비과세를 유지하여 세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재정부의 반대가 완화 될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넓은 의미의 사업소득 중 농업소득만 별도로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 등 예외규정을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국세로 통합될 경우 비과세 등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을 국세의 과세관할로 전환한다면 산림소득과 같이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 하는 것이 관리 목적상 편리할 것이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다. 그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국세인 소득세 중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고 있고, 산림소득은 소득세 중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 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농업소득이 국세로 전환된다면 소득세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 농업소득에 대한 별도관리를 쉽게 할 것이다.

<표 3-2> 농업소득의 국세 전환 시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사업소득의 종류	변경전	변경후 안
사업소득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부동산임대소득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산림소득	국세-소득세 (분류과세)	국세-소득세 (분류과세)
농업소득	지방세-농업소득세	국세-소득세 (분류과세)

3.2.5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

세제변경을 최소화 하고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의 가장 큰 단점은 국세의 주무관청인 재경부와 국세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세가 징수되지 않는 작물재배업에 사업자등록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안이다. 농민은 농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농협이 농업인에게 할당된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농협이 농업인을 관리·지도하고 대리하는 자격으로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여 사업자번호를 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농민이 농협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농협에서 이를 집계하여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즉, 농협은 사업자등록을 한 농민에 대하여 지도·관리·감독을 하여 농업인에 대한 세무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농협에는 조세협력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인에 대한 세무가 농협의 조세협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사한 사례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들 수 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차광망 등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농민이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에 농협조합 등의 환급대행기관을 통하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 처음부터 영세율이나 면세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사후에 환급해주는 이유는 다음의 기자재가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세감면의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환급대행자(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류를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어민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한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9조).

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동 특례규정 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

- 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⑦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의 장점은 농업인의 편리성이다. 농업인이 방문하기 어려워하는 세무서보다, 익숙하고 친근한 농협을 이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농협으로부터 친절한 세무지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방법의 단점은 첫째, 농협에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농협이 농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고, 계산서발행을 지도하며,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농민으로부터 접수받고, 세무서에 전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계산서 발행 관리를 세무서에서 직접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하게 되므로 계산서 발행 관리가 느슨해 질 수 있다.

농협에서 발생하는 농업인의 납세지도에 대한 관리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은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한 교부금'(국세기본법 84조, 동 시행령 65조의 2)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납세지도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로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규정되어 있다(납세지도에 대한 교부금지급규정 3조). 납세협력에 대한 교부금지급의 또 다른 예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조합에 대한 납세조합교부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

액의 2%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221조①). 실제 납세조합교부금은 현재 월 징수납부세액의 3%에서 10%사이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국세청고시 제1999-45호 1999. 12. 28).

농협에서 발생하는 납세지도에 대한 관리비용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익자인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농협 등에서 대행하는 경우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5%에 상당하는 환급대행수수료를 징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하게 될 사업자등록·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대행과 계산서 발행 관리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③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2 【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부금 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납세지도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소요되는 경비에 부족한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교부금의 지급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지급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교부금을 지급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사업 실적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⑦ 교부금의 신청·결정·지급·반환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 ① 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납세지도에 대한 교부금지급규정 제3조 【납세지도 단체의 범위】

법 제84조 제3항에 규정한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
3.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한 단체

계산서 발행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④-⑦)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업자등록·계산서합계표 제출 대행자의 통보의무와 가산세 제도를 통하여 통제해야 할 것이다.

대행자의 통보의무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될 것이다.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행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농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농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논의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의 장단점과 추가고려사항을 요약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과 장단점

사업자등록 방안	장점	단점	추가 고려사항
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법개정 없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이 아니라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있어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체계와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체제의 이원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비용 •지방자치단체의 동기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에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 관련 규정을 신설
③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에 맞게 농업인 대우 가능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체제의 이원화 회피 •최소한의 세법개정으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수입이 없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 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부과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요 •일정금액 이상에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④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체계와 일치 •사업소득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감면이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과세가 국세로 일원화 • 재경부와 국세청의 반대 완화	방세 인 경우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	록 비과세 등의 조치가 필요
⑤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	•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업자등록 • 농업인에 대한 친절한 세무지도 가능	• 농협의 관리비용 발생 • 세금계산서 발행 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	• 농협의 관리비용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필요 • 대행자의 통보의무와 가산세 제도의 신설 필요

3.3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담과 추가 논의사항

3.3.1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 부담

앞에서 제시한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관계없이, 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시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에 실질적인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①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등록내용, 농지원부 등)
- ② 전년도 생산품목, 생산량, 판매금액
- ③ 외부 구매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금액

공산품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농산물의 경우 생산품목과 경작면적 만 확인이 되면 생산가능량의 추정과 농산물의 시세를 통해 자체 생산을 통해 판매가능한 금액의 대략적인 추정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대략적인 추정치와 실제 신고하는 자체 생산매출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2장에서 설명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세무 협력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작물의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63조①). 그러나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11조②).

둘째, 교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163⑤, 동 시행령 212①).

셋째,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127조, 164조).

넷째,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익년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금액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며,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스스로 재배한 작물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3.3.2 국세 전환 시 작물재배소득의 비과세 규모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

작물재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모 산정에 참조할 수치는 농가부업소득

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다.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가축별 두수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축산부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표 3-4> 참조). 규정된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연간 1200만원 까지 비과세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9조).

<표 3-4>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가의 축산부업규모

가축종류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마리	30	30	200	300	300	5,000	10,000	10,000

* 2종류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별로 각각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비과세의 규모를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소득금액의 계산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농업인들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워 실제 적용에 있어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비과세 규모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객관적이며, 적용가능성도 높다(서희열·정규언 2005).

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규모를 수입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보면, 축산업의 경우 최고 96.6%(낙농·육우사육)에서 최저 85.3%(사슴사육)이다. 축산관련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은 91.5%, 임업 중 양묘 및 육림을 하는 영림업이 90.8%이다. 유사업종의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의 단순경비율을 약 90%(소득률 10%)로 가정하면, 소득금액 1,200만원의 수입금액 환산액은 1억20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표 3-4>의 비과세 축산부업은 고려되지 아니한 수치이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을 국세로 전환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최소한 수입금액(매출액) 1억2000만원 미만은 비과세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5년 1월 5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률 7332 부칙 5),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 기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3.3.3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가산세

현행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은 <표 3-5>과 같다.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근로소득 등의 지급 시에 제출해야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조⑤, 164조)로 미제출

금액의 2%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소득세법 81조①)와 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조④)의 대상이 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득세법 81조⑩).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농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조⑦),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에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소득세법 81조⑧), 미제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소득세법 81조⑨)가 적용된다.

<표 3-5>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사업소득의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적용대상 가산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농업 경우) 미달 (간편장부의무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농업 경우)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농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에게도 이러한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산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수입금액 1억2000만원 미만의 작물재배업을 비과세로 규정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가산세가 <표 3-6>과 같이 적용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인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아무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3억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의 무자는 간편장부를 지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표 3-6> 국세 전환과 비과세 1억2천만원 설정 시 가산세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미만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가산세 없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농업 경우) 미달 (간편장부의무자)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농업 경우)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미만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800만원 이상 - 3억원(농업 경우) 미달 (간편장부의무자)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3억원(농업 경우)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3.4 사업자등록제 실시할 경우 4대보험과의 관계

3.4.1 농업인에 대한 4대보험 지원

(1)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농어업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워진 농촌지역의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소득보장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농업인농어민 국고지원 혜택을 1인당 지원금액 최고 21,600원으로 상향되어 농어민가입자는 가입등급에 따라 매월 9,900원에서 21,600원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표 3-7>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액 (단위: 원)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등급 이상
보험료	19,800	20,700	21,600	22,500	23,400	24,300	26,100	27,900	30,600	33,300	36,000	39,600	43,200
국고보조금	9,900	10,350	10,800	11,250	11,700	12,150	13,050	13,950	15,300	16,650	18,000	19,800	21,600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농업인의 범위)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다음과 같다.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자
-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인

- 임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인

-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는 농업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47조(농업인의 범위) 제2항 및 3항에 의하여 농업소득, 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는 농업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매출액이 48백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사업자 및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농업인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에 있어 농업인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또는 축산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나.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또는 「축산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동 법 제27조 건강보험료의 지원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보험료 감면현황

농어촌지역의 보험료는 2000년 7월 통합 이후, 2000년 12월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농촌에 대한 경감율을 22%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읍면지역 농림어업인에 대하여 기존의 보험료 경감(22%)에 농특예산(8%)을 더하여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50%로 확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 6조) 되었다.

② 건강보험료 산정시 경감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특례)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할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농어민의 재산은 휴·폐경지,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③ 체납보험료의 경감(면제)

농어민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백만원 이하면서 8년 이상 된 1톤 이하의 화물차를 소유한 농어민의 체납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8>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구분	경감율	적용조건
농어촌 경감	22%	군지역 및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사업소득 연간 500만원초과 세대 중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자 제외)
도서·벽	50%	보건·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지 경감		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
농업인의 경감	28%	군·도농복합 시의 읍·면(농어촌)지역 거주세대 및 동의 녹지지역(농어촌)·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준농어촌)에 거주하는 세대로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50% 경감되며 최대 경감율은 50% 임)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농업지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사업에 대하여서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가입을 제외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을 제외하고 있어 농업 및 임업의 경우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가입대상 사업에 제외된다.

3.4.2 농업인 사업자등록 시 4대보험 관련 문제점

(1) 국민연금 관련 문제점

작물채배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신용카드결제, 사업자와의 거래시 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농산물 도·소매로 발급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농어민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고지원금지금이 중단됨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간이과세사업자 및 농업, 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농업인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47조③2).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자료가 국세청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공되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국민연금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사업자등록시 업태가 도·소매로 등록되어 우선은 농업과 관련한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작물재배업의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지식의 부족 및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의뢰 시 본인이 농업인이고 본인이 직접 생산한 작물을 판매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산물 도소매업자의 기본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배제 및 사업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액이 급증한다.

다만, 본인이 주업이 농업인이고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것으로 농업과 관련된 사업임을 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농업인의 지위를 계속유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 건강보험 관련 문제점

건강보험은 농어촌거주에 대한 경감 22%와 농업인 경감 28%가 지원되어 2006년부터 총 50%의 경감혜택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초과 세대 중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농어촌경감 22%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발급받고 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5백만원 이상 되는 경우, 농어촌경감 및 농업인에 대한 경감을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농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비록 기초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은 없어 소득세부가는 되지 않아도 소득금액은 5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건강보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가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조세부담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담액 증가로 실질적인 소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작물재배업으로 본인이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매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매장을 개설함으로써 추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정확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작물재배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촌경감 및 농업인 경감을 받지 못하여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농업인확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계속적으로 농업인으로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문제점

농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도 공단에서 이를 파악할 수 없어 대규모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화된 개인농장의 경우에도 양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거의 없다.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장관리가 되어 5인 이상의 경우에 고용 및 산재보험공단에서 가입요청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농가의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3.4.3 4대보험 관련 개선방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작물재배농가의 상시고용인력 및 일용직 인력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4대 보험가입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작물재배농가가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지식의 미흡으로 추가적인 세 부담과 4대 보험의 농업인 적용제외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1) 농장 근로자의 보험문제 해결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농장 및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갑근세 신고, 4대 보험가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과 같은 제도(이하 '고유번호증' 이라 함)를 도입하여 할 것을 제

안한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도소매업 종사자가 아니라 농업종사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발생이나 의료비 발생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농장 근로자에 대하여 농업인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문제는 세원관리차원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부분의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농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와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업인의 부담은 이전에 비하여 더 증가하게 된다. 농장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제도로 비록 농업부분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증가하게 되겠지만 농장 경영자인 농업인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장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면서 농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어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자인 공장 및 광산근로자, 운전업 및 관련종사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 등과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 등에 대해서는 연240만원 한도(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음)로 비과세 된다. 그러나 농업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추가로 실질적으로 농업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규정의 신설과, 농업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추가부담액을 감면하거나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3.5 농가등록제와 연계 방안

3.5.1 농가등록제의 현황

(1) 농가등록제의 도입목적

농가등록제는 2005년 12월에 농림부 주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회의」에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오내원 외 2006). 농가등록제는 농림부가 2006년 농정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기본이 된다.

농가등록제는 기초등록사항으로 영농종사자, 경작지규모, 재배작목,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게 해서 직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상세등록사항으로 경영실적, 영농교육실적, 정책수혜실적 등을 등록하게 해서 그 밖의 농림사업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맞춤형 농정의 기초적인 추진시스템이 된다(김수석 외 2006). 농가등록제는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고소득 겸업농 및 취미농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농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농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농민신문 2006.3.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농림부 용역을 받아 발표한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오내원 외 2006)’에 따르면 농가등록제의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직접지불제 근거를 위해서다. 농가등록제는 다수의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제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으며 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가등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농가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와 연계된 등록제가 농가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직접지불금을 통합 관리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농가 유형별 차별화 정책을 위한 기반이다. 농정의 주요 패러다임

인 농가유형별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농가가 유형화될 수 있어야 하며, 농가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파악되어야 한다. 농림부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유형별 차별화 농정 개념을 확장하여 최근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전업농 등에 집중하고, 노령층과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흐름의 농정이 효율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의 개념적 유형구분이 이루어지고 유형별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 농가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가 파악되어 그에 해당하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농가등록제는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유효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전업적 농가의 육성 기반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중 관리할 전업농을 주 대상으로 농가등록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업적 농가의 인적 상황, 경영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개별 농가에 필요한 경영·기술 교육과 자금지원, 경영컨설팅의 근거 자료로 하자는 것이다.

넷째, 소득안정정책의 기반을 위해 필요하다. 향후 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농가소득안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소득을 파악하여야 하며 농가등록제를 그 기반으로 사용하자는 견해이다.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활용 목표로서 농민단체에서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농가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 개별 농가의 생산량과 판매가격, 또는 출하기록, 각종 투입재의 영수증 거래 등 - 이 미비한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내원 외(2006)의 연구에서는 농가등록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직접지불제와 연계하여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의 전업적 농가에 대해서는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차별적 등록제를 운영한다. 축산업등록제는 방역과 환경보

전 목적으로 비교적 상세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시행한다. 단, 축산과 농업의 복합농가는 농가등록제에 포함한다. 장기적으로 농가의 소득 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득안정사업까지 뒷받침하는 등록제로 발전시키되, 가능한 품목과 계층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축산업등록제와도 통합을 추진한다.

(2) 농가등록제의 등록사항

오내원 외(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가등록제를 농가 자율 의사에 맡기는 임의등록 방식으로 하되, 농가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시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사전에 농가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정책사업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초등록사항은 농림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가장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직접지불 관련 사업에서 주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기초등록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경영주 인적사항으로 성명, 출생연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농장(작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농경지 관련사항으로 지번, 지목, 경작면적과 재배작목, 경영형태(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상세등록사항은 특정한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만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사항이다. 현 단계에서 주된 목표로 삼는 농림사업은 전업농 육성 관련 사업이다. 그 이유는 농림사업 중에서 직접지불 관련 사업 다음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많은 사업이 전업농 육성 관련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업농 육성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은 크게 ① 영농종사자 세부인적사항, ② 경영관련 사항, ③ 과거 정책사업 수혜 실적 등의 3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농종사자 세부인적사항으로는 농가의 실제 영농종사자들의 성명, 출생년도,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인육성대상자, 영농기술교육, 영농경력, 수상경력 등을 등록사항으로 한다.

둘째, 경영관련 사항으로는 농업관련 자산과 경영성과를 등록하고, 이후 매년 갱신하여 농가의 경영이력으로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자산에 해당하는 등록항목으로는 농경지 외에 대형·소형 농기계, 영농시설 등이 있고, 경영성과로는 조수입이나 매출액, 농업부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기타 등록사항으로 과거 정책자금 등의 수혜 여부나 생산기간(이용기간), 재해보험/공제 가입 유무를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한 농가정보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통합관리해 각종 농정시책 및 지원대상 선정시 참고하고 농가별 피부에 와닿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3.5.2 농가등록제의 농가 사업자등록 대체 가능성

농가 사업자등록의 주된 필요성은 첫째는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결제로 판매 하기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위함이며, 셋째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함이다. 농가등록제가 사업자등록이 가지는 이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농가등록제를 통한 계산서발행 가능성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및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계산서는 발행자와 수취자의 상호대사를 통해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사

업자는 매출처별합계표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처별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매출처별합계표와 매입처별합계표는 상호대사를 통하여 그 정확성이 검증된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출과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이후단계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계산에서 과세소득 산출의 근거가 되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농가등록제가 사업자등록이 가지는 계산서 발행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과세당국에 의하여 관리·통제되지 않는 농가등록제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과세당국이 믿을 수 없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관리·통제되지 않는 계산서를 과세당국이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농가등록제를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가능성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모든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조건으로 “가맹점 가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중인 사업자”를 제시하고 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작물재배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작물재배사업자도 일부는 필요에 의하여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업자는 가맹점 신청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당국은 신용카드 발행거래에 대하여 관리·통제를 철저히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적격증빙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사용을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반드시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2).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과세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조①66). 따라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제공된다. 이런 이유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계산서·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즉, 과세당국은 신용카드 거래의 정확성·진실성에 대하여 충분한 관리·통제절차를 갖추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적격증빙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가가 농가등록제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추진할 경우, 과세당국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가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적격증빙의 자격을 부여해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과세당국의 관리·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는 농가등록제 농가가 과세당국의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경부·국세청이 제기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가능성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관리·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는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농업인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2 【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 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농가등록제를 통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가능성

인터넷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조①, 동 시행령 13조①). 다만,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없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①).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농업인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 영위시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조①, 동 시행규칙 7조①).

이러한 사업자등록의 기능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농림부에서 농가등록제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지는 신뢰성 제고의 역할을 농가등록제가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①항과 동 법률 10조 ①항 및 동 시행규칙 7조 ①항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작물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신 농가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농가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판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 농가등록제의 농가 사업자등록 대체가능성에 대한 결론

농가등록제의 농가 사업자등록 대체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농가등록증·농가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을 개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사이버몰의 개설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5.3 농가등록제가 농가 사업자등록을 보완할 가능성

농가등록제가 농가 사업자등록을 대체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농가 사업자등록을 보완해 줄 가능성은 있다.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개별 농가의 경영관련 사항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고 검증될 수 있다면,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이나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이 가지는 단점인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행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농가등록제가 과세자료와 직·간접으로 연결된다면 농가등록 사항이 진실되지 않고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농민 관련 언론에서도 농가등록제 정보의 과세이용을 우려하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농민신문 2006.1.27, 2006.3.22).

농가등록제를 과세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연관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장단점 분석은 농가의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과대·과소보고의 동기와 검증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IV 사업자등록제 관련 방안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4.1 조사의 대상과 방법

설문조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포털사이트인 www.affis.net 메인화면에서 행해진 온라인 설문조사와 농업관련 인터넷몰 운영자 교육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협조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안내를 하였고, 아피스 회원 7만여명에게 설문을 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모두 108명이 응답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에는 모두 14명이 응답하여 총 122명의 응답이 회수되었다.

응답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응답하였으므로, 전체 농업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대표적인 표본이 아니라 재배작물의 소비자 직판의 경험과 관심이 많은 농업인들로 구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4.2.1 응답자의 특성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122명 응답자의 특성은 <표 4-1>부터 <표 4-3>과 같다.

<표 4-1> 응답자의 매출액 분포

연간 매출액	응답자 수	비율(%)
10억원 이상	1	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	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9	1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9	24
5천만원 미만	68	56
무응답	5	4
계	122	100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응답자는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이었으며, 응답자의 56%(68/122)는 연간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 이었다.

<표 4-2> 응답자 농장의 고용직원 수

농장의 고용직원 수	응답자 수	비율(%)
10명 이상	1	1
5명 이상 10명 미만	7	6
1명 이상 5명 미만	34	28
없음	75	61
무응답	5	4
계	122	100

응답자 중 61%(75/122)는 고용직원이 없이 혼자서 영농을 하고 있었으며, 28%(34/122)의 응답자는 1명 이상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표 4-3> 응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응답자 수	비율(%)
했음	41	34
안했음	81	66

계	122	100
---	-----	-----

응답자 중 34%(41/122)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66%(81/122)는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에 대한 질문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2.2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응답 분석

사업자등록을 한 4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이유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이유	응답자 수 (복수 응답)	응답자 41명에 대한 비율(%)	전체 응답에 대한 비율(%)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19	46	39
납품처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20	49	41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6	14	12
외국인 연수생 및 직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0	0	0
기타	4	10	8
계	49	119	100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이유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에 응답한 비율은 41명 중 19명으로 46%이었으며, “납품처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은 41명 중 20명으로 49%였다. 설문지에는 기타로 응답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하여”라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비율은 41명 중 6

명으로 14%였다. 그 외의 기타 사유로는 “소비자와 신뢰구축으로 소득 증대를 위해”, “대출시 필요 때문에”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기에”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 및 직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라는 질문에는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표 4-5>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종목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	응답자 수	비율(%)
업태: 도·소매, 종목: 농산물	27	66
업태: 소매, 종목: 전자상거래	3	7
업태: 제조, 종목: 버섯재배	3	7
기타	8	20
계	41	100

응답자 중 66%(27/41)는 업태를 도·소매로, 종목은 농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소매·전자상거래로 등록한 응답자와 제조·버섯재배로 등록한 응답자가 각각 7%(3/41)이었으며, 그 외 도소매·화훼, 도소매·쌀, 임업·장뇌삼, 임업·표고버섯, 임업·버섯재배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4-6> 작물재배업의 판매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	응답자 수	비율(%)
알고 있음	29	71
몰랐음	12	29
계	41	100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벼, 과일, 버섯, 특용작물 등과 같은 작물재배업의 경우에 스스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1%(29/41)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29%(12/41)의 응답자는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7>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종합소득세 납부 경험	응답자 수	비율(%)
납부경험 있음	7	17
납부경험 없음	34	83
계	41	100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7%(7/41)의 응답자는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3%(34/41)의 응답자는 납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농업인은 스스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 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29%는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17%의 농업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었다.

<표 4-8>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액이 증가 여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액이 증가 여부	응답자 수	비율(%)
증가하였다	22	54
아니다	19	46
계	41	100

사업자등록 이후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54%(22/41)의 응답자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6%(19/41)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표 4-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	응답자 수	비율(%)
받았다	18	44
아니다	23	56
계	41	100

사업자등록 이후에 농장의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44%(18/41)의 응답자가 안내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56%(23/41)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표 4-10> 직원의 4대 보험 가입현황

보험 종류	가입자 수	비율(%)
국민연금	10/41	24
건강보험	10/41	24
고용보험	3/41	7
산재보험	5/41	12
평균	7/41	17

농장직원의 4대 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24%(10/41), 고용보험은 7%(3/41), 산재보험은 12%(5/41)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4-11>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 여부

소득세 신고 여부	응답자 수	비율(%)
-----------	-------	-------

하고 있다	23	56
하지 않는다	18	44
계	41	100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6%(23/41)의 응답자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18/41)의 응답자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12> 세무신고의 방법

세무신고의 방법	응답자 수	비율(%)
본인이 직접	24	58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11	27
세무를 잘 아는 지인을 통해	0	0
기타	6	15
계	41	100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58%(24/41)의 응답자가 본인이 직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7%(11/41)의 응답자는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의 응답은 “2006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아직 신고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4-1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	응답자 수 (복수응답)	응답자 41명에 대한 비율(%)	전체 응답에 대한 비율(%)
세무신고의 어려움	25	61	37
재배작물의 소득세 비과세	20	49	30

증명			
소득세 부담	6	15	9
본인 및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	8	20	12
기타	8	20	12
계	67	165	100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질문에는 41명의 응답자 중 25명(61%)이 “세무신고의 어려움”에 답을 하였으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배작물의 소득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것”에 49%(20/41)의 응답자가 답을 하였다. “소득세 부담”과 “본인 및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와 20%에 불과하였다.

기타의 응답으로 “세무당국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 어려웠다.”, “세무관리에 대해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바쁜 일정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힘들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4-13>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1순위 응답자수	1순위 응답 비율(%)	1+2순위 응답자수	1+2순위 응답 비율(%)
지방세 담당 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10	24	17	25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9	22	18	27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4	10	9	13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15	37	20	29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3	7	4	6
계	41	100	68	100

*12명은 1순위만 응답하였음.

“현재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를 개선한다면, 다음 중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농협에서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37%(15/41)로 가장 높았다. “농업소득세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담당 과세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24%(10/41)로 두 번째 많았으며,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22%(9/41)로 세 번째로 많았다.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 없이 농업소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여, 세무서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에는 10%(4/41) 응답자만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방안은 7%(3/41)만 1순위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지방세 과세관청인 시·군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과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세무신고가 간편했으면 좋겠다.”, “농장 사업자등록을 동이나 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실제 농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 시에는 행위에 관계없이 세무신고 면제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4.2.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의 응답 분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8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4>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편한 점	응답자 수 (복수응답)	응답자 81명에 대한 비율(%)	전체 응답에 대한 비율(%)
소비자 직거래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는 점	45	56	43
사업자와 거래시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점	31	38	29
외국인 사업연수생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	12	15	12
기타	16	20	16
계	104	129	10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81명의 응답자 중 45명(56%)이 “소비자 직거래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는 점”을 선택하였다. “사업자와 거래시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점”을 38%(31/81)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외국인 사업연수생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선택한 응답자는 15%(12/81)에 불과하였다.

기타 불편한 사항으로 “전자상거래를 하지 못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못함”, “불편사항 없음”, “등록 유무의 차이점을 모르겠음”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4-15>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 유무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	응답자 수	비율(%)
있다	50	62
없다	31	38
계	81	100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에는 62%(50/81)의 응답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이 있다고 답하였고, 38%(31/81)의 응답자가 없다고 답하였다.

<표 4-16> 사업자등록 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의 인지여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	응답자 수	비율(%)
알고 있다	40	49
모른다	41	51
계	81	100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벼, 과일, 버섯, 특용작물 등과 같은 작물재배업의 경우에 스스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라는 질문에는 49%(40/81)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1%(41/81)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4-17> 사업자등록 시 세무신고와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인지여부

세무신고와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사실	응답자 수	비율(%)
알고 있다	38	47
모른다	43	53
계	81	100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일용직포함)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라는 질문에는 47%(38/81)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3%(43/81)의 응답자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4-18>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편한 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편한 점	응답자 수 (복수응답)	응답자 81명에 대한 비율(%)	전체 응답에 대한 비율(%)
세무신고 및 추가적인 세무부담	52	64	38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40	49	29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 증가	34	42	24
기타	12	15	9
계	138	170	100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4%(52/81)가 “세무서에 세무신고 및 추가적인 세무부담”을 선택하였으며, 49%(40/81)의 응답자는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에 따른 부담”을 선택하였다. 42%(34/81)의 응답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 증가”를 선택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일정치 못한 신고소득을 인정해줄지 여부에 대한 걱정”, “각종 신고사항이 많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19> 세부담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는 방안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는 방안	응답자 수	비율(%)
찬성	41	51
반대	40	49
계	81	100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1%(41/81)의 응답자가 찬성하였고, 49%(40/81)의 응답자가 반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였다.

<표 4-20>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1순위 응답자수	1순위 응답 비율(%)	1+2순위 응답자수	1+2순위 응답 비율(%)
지방세 담당 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19	24	36	25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11	14	30	21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4	5	15	11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39	50	52	37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5	7	9	6
계	78	100	142	100

* 3명은 무응답이며, 14명은 1순위만 응답하였음.

“현재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를 개선한다면, 다음 중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농협에서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50%(39/78)였다.

“농업소득세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담당 과세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24%(19/78)였으며,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는 14%(11/78)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없이 농업소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여, 세무서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5%의 응답자만 1순위로 선택하였고, “현재와 같이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방안은 7%의 응답자만 1순위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아니한 응답자들도 사업자등록을 이미 한 응답자들과 마찬가지로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지방세 과세관청인 시·군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과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에 “농민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게 등록과 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등록에 따른 간편한 절차와 농가담당자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자등록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세부담 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등록 없이도 유통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가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가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농가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고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는 50,000원 이상의 경비 지출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과하고 있다. 비록 농민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셋째, 농장의 규모화가 증대되면서 농업부문의 고용 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산업연수생들을 고용하기 위하여서는 산재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고용 인력에 대한 세원관리(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제도 하에서 사업자등록이 없이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으로 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③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 ④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⑤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농민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은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세법개정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과세되지 않아 함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농업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이 배제되어 다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의 장점은 농가의 사업자등록 문제와 계산서 발행 문제를 현행의 과세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원칙에 따라 과세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방안의 단점은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관리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세법에 의해 발행된 계산서를 국세에서 인정하는 문제와 계산서의 상호검증을 위한 자료 교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발생할 상당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안의 장점은 농업인을 도·소매업자로 대우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농업인 대우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제도의 이원화를 피할 수 있고, 최소한의 세법개정으로 실질에 맞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국세의 주무관청인 재경부와 국세청이 국세부과와 관련없는 인력과 장비 등 행정력 낭비, 허위 계산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 농업 관련인의 위장 등록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국세로 일원화 된다는 점,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가 세무서로 일원화 된다는 점, 비록 단기적으로는 비과세를 유지하여 세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재경부의 반대가 완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국세로 통합될 경우 비과세

등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의 장점은 농업인의 편리성이다. 반면에 단점은 농협에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계산서 발행 관리를 세무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하게 되므로 계산서 발행 관리가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억2천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농장 및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갑근세 신고, 4대 보험가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할 것을 제안한다. 농장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면서 농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가등록제의 농가 사업자등록 대체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농가등록증·농가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을 개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사이버몰의 개설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비자 직판에 관심이 있는 122명의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주된 동기는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과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업자등록 방안은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세무신고의 어려움을 들었다. 넷째,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과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를 세무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때는 일정 수준의 매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농업소득세의 국세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는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수석·김태곤·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택·임송수·박준기·문한필, 2004,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89.
- 김정호·김태곤·조성열, 2004,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 김태용, 2004, 농업법인 및 기업농의 활성화를 위한 세무 및 제도 개선안, 미발표자료
- 농민신문, 2006.3.22,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기본바탕 '농가등록제'.
- 농민신문, 2006.1.27, 농림부 도입결정 '농가등록제' 세금추징 등 등록정보 악용 우려.
-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 2004.5, 농업인 전용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 박문호·전익수, 2000,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 등, 1996,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희열, 2005, 소비세제법, 세학사.
- 서희열·정규언, 2005, 농업분야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연구용역보고서.
- 서희열·정규언, 2006,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7권 1호, 한국세무학회.
- 서희열·정규언, 2006,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판매 관련 조세제도 개선방안, 경상논집,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 오내원 외, 2006,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만우·정규언·정재연·노준화, 2006, 세법개론, 세학사.
- 재정부 소득세과, 2006.5.9,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관련 검토.

- 최세균 등, 2000,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OTRA, 2004.6.2, 中, 농산물에도 상표등록 바람, global window, www.globalwindow.org.
- 황의식·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실태와 요인분석」. 연구보고 R4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AAFC), 2003, 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CAIS) Program Handbook.
- Fargher, Ben, 2002, "Farm Polic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n Austrian Observation", Winston Churchill Memorial Trust.
- Khan, Mahmood Hasan, 2001, "Agricultural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of issues and policy", Agricultural Economics, Volume 24, Issue 3: 315-328
- Lankoski, Jussi and Markku Ollikainen, 2003, "Agri-environmental externalities: a framework for designing targeted policies", Eur. Rev. Agric. Econ., 30: 51 - 75.
- Tao, Ran, Justin Yifu Lin, Mingxing Liu and Qi Zhang, 2004, "Rural tax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in China", Agricultural Economics, Volume 31, Issues 2-3: 161-168

부록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지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로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설문지를 통하여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별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상 응답시간은 10분입니다.

2006년 11월

강남대 서희열 교수

(suhhy810@hanmail.net 031-280-3810)

미래회계법인 김태용 회계사

(loveagro@hanmail.net 031-236-0015)

고려대 정규언 교수

(jungkyu@korea.ac.kr 041-860-1526)

□ 통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물재배업인 벼, 곡류, 화훼, 과수,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며, 축산업은 본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산품목:()

연간 매출액(판매금액, 조수익): ()

가. 10억원 이상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마. 5천만원 미만

농장주를 제외한 농장의 고용직원 수 ()

- 가. 10명 이상
- 나. 5명 이상 10명 미만
- 다. 1명 이상 5명 미만
- 라. 없음

사업자등록여부: 예() (2쪽으로 이동) 아니오() (3쪽 아래로 이동)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설문

1.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가.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 나. 납품처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 다. 외국인 연수생 및 직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 라. 기타()

2.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지요? ()

- 가. 업태: 도·소매 종목: 농산물
- 나. 업태: 제조 종목: 버섯재배
- 다. 기타(업태: 종목:)

3.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벼, 과일, 버섯, 특용작물 등과 같은 작물재배업의 경우에 스스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 가. 예 나. 아니오

4.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지요?()

가. 예 나. 아니오

5.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은 얼마정도인지요?(4번에 예로 답한 경우)()

가. 10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라. 30만원 미만

6. 사업자 등록 이후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액이 증가하였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7. 사업자등록 후 농장의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가. 예 나. 아니오

8. 농장 직원에 대하여 4대 보험 중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연금 나. 건강보험 다. 고용보험 라. 산재보험

9.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지요?()

가. 예 나. 아니오

10.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 본인이 직접 나. 세무회계사무소 다. 세무를 잘 아는 지인

라. 기타()

1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가. 세무신고의 어려움

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배작물의 소득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것

다. 소득세 부담

라. 본인 및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

마. 기타()

12. 현재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를 개선한다면, 다음 중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가. 농업소득세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담당 과세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나.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 없이 농업소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여, 세무서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농업인은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농협에서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마. 현재와 같이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13.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질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가. 소비자 직거래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는 점

나. 사업자와 거래시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점

다. 외국인 사업연수생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

라. 기 타 ()

2.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이 있는지요?()

가. 예 나. 아니오

3.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버, 과일, 버섯, 특용작물 등과 같은 작물재배업의 경우에 스스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가. 예 나. 아니오

4.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일용직포함)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가. 예 나. 아니오

5.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가. 세무서에 세무신고 및 추가적인 세무부담

나.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에 따른 부담

다.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 증가

라. 기타()

6.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찬성한다 나. 반대한다

7. 현재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를 개선한다면, 다음 중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가. 농업소득세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담당 과세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나.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없이 농업소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여, 세무서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농업인은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농협에서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마. 현재와 같이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8.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감사합니다.